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772 추심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은행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5,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사업체에 25,425,51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2014. 9. 30. C이

라는 업체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도 착오로 원고가 과거에 거래하던 'D'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E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로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착오 송금 사실 및 E의 승인 사실을 알리고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착오 송금한 금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2014. 10. 22. E과 사이에 액면 25,425,51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E에 대한 25,625,510원의 채권(= 약속어음채권 및 지연이자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 ○○○○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625,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가 없다¹⁾.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류경은

1)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3451 채권가압류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2015. 4. 23. 자 준비서면(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에도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증의 신청은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4회에 이르는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변론종결일까지 위 첨부자료에 대한 서증신청을 하지 않았다.